

2020회계연도 결산증인의 건

의안 번호	365
----------	-----

제출년월일 : 2021. 5.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I. 제안이유

2020회계연도 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II. 주요내용

1. 결산개요 : 주민이 알기쉬운 결산정보 “별첨”

2. 세입·세출결산

가.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가)	전년도 이월액(나)	예산현액 (다=가+나)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잉여금	
				라	라/다	마	마/다	바=라-마	바/다
합 계	590,629	92,885	683,514	686,267	100	551,244	81	135,023	20
일반회계	527,527	85,834	613,361	617,104	101	499,039	81	118,065	19
특별회계	63,102	7,051	70,153	69,163	99	52,205	74	16,958	24

나. 세입결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가)	전년도 이월액(나)	예산현액 (다=가+나)	징수 결정액(라)	실제 수납액(마)	불납 결손액(바)	미수납액 (사=라-마-바)	비율(%)	
								마/다	마/라
합 계	590,629	92,885	683,514	691,370	686,267	777	4,326	100.4	99.3
일반회계	527,527	85,834	613,361	621,733	617,104	774	3,855	100.6	99.3
특별회계	63,102	7,051	70,153	69,637	69,163	3	471	98.5	99.3

다. 세출결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액 ㉥	집행잔액 ㉦=㉢-㉣-㉤-㉥-㉦
합 계	590,628	92,885	683,514	551,244	109,745	4,688	17,837
일반회계	527,526	85,834	613,361	499,039	92,254	4,598	17,470
특별회계	63,102	7,051	70,153	52,205	17,491	90	367

※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자금없는 이월액 3,318백만원(명시 3,293, 사고 25)을 포함

라.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결산상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135,023	106,427	70,260	14,242	21,925	4,691	23,905
일반회계	118,065	92,229	61,969	14,242	16,018	4,601	21,235
특별회계	16,958	14,198	8,291	-	5,907	90	2,670

※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자금없는 이월액 3,318백만원을 포함하지 않음.

마.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예산이용 : 없음
- 예산전용 : 23건 468백만원
- 예산이체 : 332건 88,815백만원

바. 예비비 지출

(단위:백만원)

구 분	예비비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예비비	1,007	994	948	-	46

3. 기금결산

(단위: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계	23,385	△7,587	7,407	14,994	15,798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6,165	96	4,559	4,463	6,261
평창군체육진흥기금	4,374	△92	93	185	4,282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2,530	1,044	1,044	0	3,574
평창군재난관리기금	1,380	72	1,345	1,273	1,452
평창군식품진흥기금	111	15	54	39	126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85	18	18	0	103
평창군사회복지기금	8,740	△8,740	169	8,909	0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0	0	125	125	0

4. 재무제표

(단위:백만원)

구분 회계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운영결과
일반회계	2,925,880	45,672	2,880,208	389,850	488,231	(98,381)
기타특별회계	230,009	1,307	228,702	22,646	28,192	(5,546)
기금회계	17,151	6,164	10,987	8,241	2,899	5,342
지방공기업특별회계	273,117	3	273,114	15,545	7,905	7,640
내부거래	(142,637)	(12,267)	(130,370)	(23,168)	(23,168)	0
합 계	3,303,520	40,879	3,262,641	413,114	504,059	(90,945)

5. 성과보고서

(단위: 개)

부서별	성과목표						비고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2	73	148	25	62	61	
기 획 실	1	2	8	1	4	3	
행 정 과	1	3	7	1	3	3	
올림픽유산과	2	1	4	2	1	1	
복 지 정 책 과	1	6	11	0	5	6	
가 족 복 지 과	1	7	13	2	2	9	
민 원 과	1	2	3	0	3	0	
재 무 과	1	2	4	0	2	2	
교 육 체 육 과	1	6	16	2	6	8	
문 화 관 광 광	2	5	13	1	6	6	
허 가 과	1	1	2	1	1	0	
일자리경제과	1	6	9	2	4	3	
환 경 위 생 과	1	5	6	1	2	3	
산 림 과	1	2	4	0	3	1	
안 전 교 통 과	1	3	6	1	3	2	
건 설 과	1	6	12	5	4	3	
도 시 과	1	3	6	1	5	0	
보 건 의 료 원	1	4	6	0	2	4	
농업기술센터	1	6	13	5	4	4	
의 회 사 무 과	1	1	1	0	0	1	
상하수도사업소	1	2	4	0	2	2	
읍 면	0	0	0	0	0	0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 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